

『구미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김근한 의원

2. 찬 성 자 : 김낙관 의원 외 11인

3. 제안이유

- 회기 중 직무로 인한 상해·사망한 경우에만 보상금을 지급하던 것을 비회기 중에도 보상할 수 있도록 하여 의원들의 적극적이고 원활한 의정활동이 가능하도록 개선코자 함.

4. 주요내용

- 비회기 중의 의정활동을 직무의 범위에 포함 (안 제2조제1호)

5. 검토의견

○ 본 개정조례안은

- ◆ 현재 조례의 내용 중 ‘직무’의 정의를 회기 중으로 한정하고 있어 비회기중의 의원의 의정활동 시 보상금지급에 문제의 소지가 있음을 개선코자 하는 안으로

○ 검토 결과,

- ◆ 개정조례안은 단어의 정의 중 ‘직무’의 기간을 회기와 비회기중 모두를

포함토록 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기간에 대한 문제의 소지를 사전에 막고자 함으로 판단됨.

- ♦ 또한,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과 동법 시행령이 2022년 전부개정 당시 비회기 중 상해·사망보상금 지급 기준을 완화해 비회기 중에도 보상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현행 조례보다 더 넓게 보장하고 있음.
- ♦ 따라서, 조례 개정에 타당성이 있고 상위법령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한다는 측면에서 개정이 적절하다고 판단됨.